건강한 국민, 신뢰받는 병원, 미래를 선도하는 협회가 함께 합니다.

사 단
법 인

대 한 병 원 협 회

SMART 2030

수 신 병원장
참 조
제 목 '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' 변경사항 안내

1. 관련 근거 :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-8126(2025.12.10.)
2. 보건복지부는 '25.10.20. 중대본 **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 단계 해제**에 따라 **'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' 적용 대상을 변경**한 바 있습니다.
3. 이와 관련, 필수의료 분야 인력공백 해소 및 지역간 응급의료 격차 완화 등을 위해서 **적용대상에 '응급의학과'를 추가**하여 재변경함을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구분	종전조치('25.10.20.)	변경조치('25.12.15.)
법적 근거	**「의료법」 제33조제1항제3호** -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은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행위 가능	
적용 대상	① 필수의료 인력 부족 완화를 위해 진료할 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을 「의료법」 제3조의3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**필수진료과목*으로 한정**하여 종전조치 지속 * 내과, 외과, 소아청소년과, 산부인과, 영상의학과, 마취통증의학과, 진단검사의학과, 병리과, 정신건강의학과, 치과 ** 진료할 의료기관에서 심평원 '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'을 통해 '기타' 인력으로 신고	① 필수의료 인력 부족 완화를 위해 진료할 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을 「의료법」 제3조의3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**필수진료과목** **② 응급의학과**
시행 시기	- **필수진료과목**에 대한 종전조치는 별도 통보시까지 계속 적용 - **필수진료과목** 외 진료과목에 대한 종전조치는 2025.12.31. 종료	- **필수진료과목+응급의학과**에 대한 종전조치는 별도 통보시까지 계속 적용 - **필수진료과목+응급의학과** 외 진료과목에 대한 종전조치는 2025.12.31. 종료

※ 인력신고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 관련 문의 : 심평원(T. 1644-2000). 끝.

대 한 병 원 협 회 장

대리 허경재　　팀장 유소영　　국장 장은혜

시행: 정책국 제2025-406호(2025.12.11.)

(04165)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15(마포동 35-1) 현대빌딩13~15층 / www.kha.or.kr
전화 02-705-9235 전송 02-705-9219 (대표FAX: 02-705-9209) E-mail: hkj@kha.or.kr